

안양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

제정 1993. 7. 22 훈령 제223호
전부개정 2013. 1. 16 훈령 제5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질서 확립 및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력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모집 및 시험

제3조(모집방법) ①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신규임용 청원경찰 모집은 공개 경쟁시험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따를 수 있다.

1. 시 소속 일용직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 직무와 상응한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할 경우 모집기간, 모집인원,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일 10일 이상 공고기간을 두고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은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모집제한) 청원경찰은 다음 대상자에 한하여 모집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신체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특별임용 시험에 한함)
2. 이력서 2부
3. 병력증명서(주민등록초본) 2부
4. 채용신체검사서 2부
5. 신원증명서 2부
6. 신원진술서 5부
7. 가족관계등록부 2부
8. 그 밖의 학력,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응시수수료 등은 시험공고에 따름

제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2차 시험을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② 1차 필기시험은 국사와 일반상식으로 평가하고, 2차 면접시험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의 면접시험 기준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다.

제7조(필기시험의 가산) 제6조에 따른 1차 필기시험에 있어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정하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8조(합격자 결정 및 통지) ① 제6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합격통지는 게시판 공고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9조(시험위원) ① 시험실시에 관한 출제·감독·채점·면접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은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임용 및 전보

제10조(신규임용)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신규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임용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용 배치한다.

제11조(순환전보) ① 청원경찰의 부서별·근무지별 순환전보는 2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부서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및 훈계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가급적 시설관리등 주·야간 교대근무분야와 감시단속 분야를 상호교류 전보한다. 다만, 문책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전보시 구청내 전보는 구청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직무 및 감독

제1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법령을 준수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의 관리, 불법행위의 단속등 맡은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교육) 규칙 제13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소속 실·과·단·소장이, 구청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주관하에 소속과·동장이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전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소속 실·과·단·소·동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을 지도감독 한다. 다만, 근무지가 분산 배치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비치, 부책을 확인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안양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

- ② 제1항의 경우 담당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과·단·소·동장이 지시·명령할 수 있다.
- ③ 소속 실·과·단·소장 및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명령사항의 이행이 불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안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요구 할 수 있다.

부칙 <2013. 1. 16 훈령 제590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